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46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정일영 · 최민희 · 이기현
권향엽 · 박지원 · 안도걸
조인철 · 김교홍 · 황정아
문금주 · 박홍근 · 윤후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근로자가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결혼준비휴가로 휴업한 기간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결혼준비휴가) ① 사용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이하 “결혼준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66조”를 “제61조의2제1항·제2항, 제6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준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생 략)</p> <p>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 으로 본다.</p> <p>1. 2. (생 략)</p> <p><u><신 설></u></p> <p>3. ~ 5. (생 략)</p> <p>⑦ (생 략)</p> <p><u><신 설></u></p>	<p>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u>2의2. 근로자가 제61조의2제1항 에 따른 결혼준비휴가로 휴업 한 기간</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61조의2(결혼준비휴가) ① 사용 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 일까지 5일의 휴가(이하 “결혼 준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으로 한다.</u></p> <p><u>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 가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에 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u></p>

제11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4. (생략)

③ (생략)

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제61조의2제1항·제2항, 제66조-----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